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42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김준혁 · 김용만 · 김준형
문진석 · 민홍철 · 박성준
박정현 · 박희승 · 염태영
윤종오 · 이상식 · 이수진
임미애 · 전종덕 · 정준호
정혜경 · 진선미 · 최혁진
추미애 · 허영 · 황명선
의원(21인)

제안이유

일제강점기인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다수의 조선인 노동자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경위와 희생자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유해 수습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해저 갭도에 매몰된 희생자 유해가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과 인권 회복이 지연되고 있음.

최근 2026년 1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가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이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음. 다만, 해당 합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가족 확인,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동안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조사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있었으나,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법률은 마련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공동조사 추진과 유해 발굴·감식, DNA 분석 및 봉환 절차가 개별 행정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집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일 간 합의 사항이 실제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던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해결하고, 희생자의 존엄과 인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과 한·일 간

협력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의 책무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 등에 관한 시책 마련 의무, 외교적 노력 의무, 유족 의사 존중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함(안 제5조).
- 라. 외교부장관이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원확인을 거친 후에는 국내 봉환 및 본가 봉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외교부장관이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가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외교부장관이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대한민국으로 봉환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생탄광 수몰사건"이란 1942년 2월 3일 일본의 야마구치 지역의 장생탄광에서 발생한 수몰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장생탄광 수몰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4. "희생자유해"란 제2호에 따른 희생자 유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유해수습, 현장 감식 등을 포함한다. 이하 "조사·발굴"이라 한다) 및 봉환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희생자유해를 조사·발굴하고 대한민국으로 봉환하며 희생자유해의 유족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①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그 밖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희생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해·유품의 보존 등) ① 외교부장관은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할 때에는 유전자 시료(試料)를 채취하는 등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친 희생자유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유족이 확인된 희생자유해: 유족의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본가로 봉송(奉送)한다.

2. 유족이 확인되지 아니한 희생자유해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희생자유해: 대한민국으로 봉환한 후 유족이 확인될 때까지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해보관소에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희생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와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유전자 검사)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신원과 유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생자유해와 유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외교부장관은 제보·증언 및 발견신고 등을 통하여 희생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정도와 유해 조사·발굴의 결과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신원확인 및 봉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희생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외국과의 협력) 국가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을 수행할 수 있으며,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국제조사·발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2조(국회 보고) 외교부장관은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봉환의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희생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봉환 등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